

# 貿易法 (案)

## 目次

第一條	目的	一
第二條	貿易計劃公布	一
第三條	輸出入節次	二
第四條	輸出入許可	二
第五條	指揮監督	三
第六條	貿易業者之登錄	四
第七條	輸出物品之標準及檢查	四
第八條	輸出物品之表記事項	四
第九條	輸出之獎勵	四

第十條	輸出斗一元化	五
第十一條	價格斗評價	五
第十二條	輸出代金斗田收	五
第十三條	擔保提供	五
第十四條	報告斗調查	六
第十五條	輸出斗停止	六
第十六條	罰則	六
附則		七

# 貿易法 (案)

第一條 (目的) 本法는輸出을振興하며輸入을調整하고健全한去來를促進함으로서國際收支의均衡과國民經濟의發展을圖謀함을目的으로한다

第二條 (貿易計劃의公布) 商工部長官은年一期乃至二期로 나누어輸出禁止品目、輸入許容品目과輸出入의限度、規格、地域에關한事項(以下貿易計劃이라한다)을定하여每期三十日以前에部令으로서公布한다. 三十日以前에部令으로서의公布가 없을 때에는前期의貿易計劃을當期の貿易計劃으로한다

國際情勢 또는國內需給事情에依하여前項의規定에依한貿易計劃을変更코자할 때에는그變更은部令으로서公布하되이部令은公布日로부터大十日을經過하여施行한다

商工部長官이前二項의規定에依하여貿易計劃의樹立 또는變更를 하고자할 때에는國務會議의議決을거쳐야한다

物品의輸出 또는輸入은前三項의規定에依한貿易計劃의範圍內에서行하여야한다

第三條 (輸出入節次) 物品을輸出 또는輸入하고저하는者는外國換銀行의長에게輸出信用狀의確認 또는輸入信用狀의開設을申請하여야한다

外國換銀行의長은前項의規定에依한申請이다음의各號에附合하는境況에輸出信用狀을確認하거나輸入信用狀을開設하여야한다

一、第二條의規定에依한貿易計劃

二、第十一條의規定에依한價格

三、本法과本法에依하여發하는大統領令,部令 또는他法令으로서輸出入에關하여規定한事項

稅關長은前項의規定에依한信用狀이 있을때에는當該輸出 또는輸入通關을免許하여야한다

第四條 (輸出入許可) 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物品을輸出 또는輸入하고저하는者는前條의規定에不拘하고商工部長官의許可를받아야한다 許可받은事項을變更코저할때에도또한 같다

一 大抵領令으로서個別的으로제정할特殊物品

二 信用狀到着銀行에서船積書類에依하여先決濟되는金額의輸出代金の入到에未達한物品

三 取消不能確認信用狀의荷物換어음에依한代金決済를하는契約에依하여輸出 또는輸入하는物品

四 物々交換貿易契約에依하여輸出 또는輸入하는物品

五 仲造貿易契約에依하여輸出 또는輸入하는物品

六 委託加工貿易契約에依하여輸出 또는輸入하는物品

第五條 (指揮監督) 商工部長官은第三條의規定에依한輸出入事務에關하여外國換銀行의長과稅關長을指揮監督한다

外國換銀行의長은輸入信用狀開設副本및輸出代金入金報告書를稅關長은輸出入通關完了報告書를遲滯없이商工部長官에게提出하여야한다

外國換銀行의長과그職員으로서第三條의規定에依한事務를擔當하는者는그事務와의關係

106

三

에 제한하여公務員의身分을 가진다

第六條(貿易業者의登錄) 外國貿易業者으로 하고자 하는者는大統領令의定하는資格을具備한者로서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商工部에登錄을하여야한다

生産業者가自家生産에關하여輸出 또는輸入 하고자 하는境匯에는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商工部에申請을하여야한다

第七條(輸出物品의標準과檢査) 商工部長官은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特定輸出物品에對하여品質의標準 等級 또는包裝條件을指定할수있다

商工部長官은物品을輸出하는者에對하여指定하는機關의檢査를받을것을命令할수있다  
但他法律에依하여檢査를받으는境匯에는例外로한다

第八條(輸出物品의表記事項) 包裝한物品을輸出하고자하는者는品名、商標、商號、原産地를그包裝에表記하여야한다

第九條(輸出의獎勵) 政府는缺損輸出을하는者에對하여는大統領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그缺損의全部 또는一部를補償하거나其他有効한措置를取할수있다 國際博覽會에出品하

은 有로 什 缺損이 生한 者에 對하여 도 可 行 矣 다 .

第十條 (輸出의 一元化) 商工部長官은 輸出物品의 價格維持上 必要하다 且 認定하느 價 運에

은 同業者의 組合 또는 團體를 指定하여 輸出하게 할 수 있다

第十一條 (價格의 評價) 輸出物品의 價格은 當該信用狀開設當時의 그 相對便輸入地港口着

(C) F) 을 基準으로 하고 輸入物品의 價格은 當該許可 또는 信用狀開設當時의 그 相對便輸

出地港口本船着 (F) O) B) 을 基準으로 하여 評價한다

商工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準價格과 그 最低 또는 最高의 價格을 定하여 公 告 한다

第十二條 (輸出代金의 回收) 第三條 또는 第四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을 行한 者은 그 代金 決済

方法에 따라 通關後二十日以内에 外國銀行에서 代金回收 節次를 받아야 하며 九十日以内에

代金을 回收하여야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限內에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하지 못할 때에는 그 理由를 商工部長

官에게 申告하여 期限의 延長을 받거나 未回收代金의 處理에 關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三條 (擔保提供) 第四條第二號乃至第四號와 第六號의 規定에 該當하느 輸出 또는 輸入

을 하고 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實行을 保障하기 爲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物  
의 價格의 五割 以內에 該當하는 現金·證券 또는 其他의 擔保物을 提供케 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한 輸出 또는 輸入이 實行되지 아니하였을 虞에 是의 現金·證券·其他의 擔  
保物의 一部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庫에 歸屬된다

第十四條 (報告의 調査) 商工部長官은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大統領令이나 部令에  
違反할 虞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는 報告를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實地 調  
査를 시킬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實地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長官의 調査命令書를 携帶하여야 하며 要求가  
있을 때에 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輸出의 停止) 商工部長官은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發한 大統領令이나 部令 또는  
處分에 違反하는 者에 對하여는 一年 以下의 期限內에서 輸出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十六條 (罰則) 第四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證을 받지 아니하거나 第三條의 規定에 依한 信用狀  
없이 輸出 또는 輸入을 하는 者은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그 物價原價의 二倍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三條、第四條의 規定에 依한 節次를 取함에 있어 虛偽 申告를 하거나 虛偽 證明을 한者、第  
 十四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 報告를 한者는 六月 以下의 懲役 또는  
 五萬圓 以上의 罰金에 處한다

法人의 代表者 또는 使用人이 그 法人의 業務나 財産에 關하여 前二項에 規定한 行爲를 하였을 處  
 暹에 是行爲를 有를 處罰한다 外에 그 法人에 對하여 各項 該當의 罰金 刑을 科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政府가 그 所有 外貨로서 直接 輸出入하는 境暹에 도 이를 適用한다

本法 第二條의 規定에 依한 貿易計劃에 接觸되는 物品으로서 稅關 構內에 收容된 後 藏置 期限이 經  
 過되어 稅關長이 關稅法 第七十三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賣却코지 할 때에 是 商工部長官의 指示  
 를 받아야 한다

商工部長官은 前項의 物品이 國內 産業을 阻害한다 고 認定하는 境暹에 是 再輸出을 條件을 두는 處

七

賣却케 하거나 賣却處分을命할수있다

軍政法令第八十二號「對外貿易規則」과第四百十九號「對外貿易規則」은廢止한다 但本  
法施行當時에未完結된輸出入行爲는從前의例에依한다

## 貿易法制定에 관한提案理由

憲法第八十七條에 「對外貿易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統制下에둔다」고規定되어있으나現在까지는單政法令에依據하여貿易行政을運營하여왔는데바現實情에符合치않는點이있을뿐만아나라國家百年之大計를爲하여는輸出入均衡을目標로하는貿易體制가確立되어야함으로輸出入의獎勵輸出品의評價向上 輸出入計劃의策定價格의評價 去來方式과條件에關한許可와委任 健全한貿易業者의指導育成等을自途로本法을制定實施코저함

공백